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22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1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소276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02,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장비사용료 25,4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1279).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7. 23. 'C은 원고에게 25,4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3410),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4. 23.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선행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금제234호로 공탁된 공탁금 25,467,000원에 관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6779) 2020. 8.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10274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8. 1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금제234호로 공탁된 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10. 22. 2020금제234호로 공탁된 25,46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8,839원의 합계액 25,485,839원에서 집행비용 19,986원을 공제한 25,465,85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채권금액 2,000만 원의 1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0,702,303원을, 채권금액 27,589,482원의 1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4,763,55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702,303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에게 10,702,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0. 6. 23. C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20. 7.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병훈, 판사 이소연, 판사 이도훈